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공탁법 20~20p (2) 박스	개념,공식-설명	<p>(2) 공탁자·피공탁자의 확정</p> <p>내용동일</p> <p>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유연회사의 대표자 공탁제도는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하여 운영되는 것이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또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 공탁통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판 1994.5.27. 94다7607).</p>	<p>(2) 공탁자·피공탁자의 확정</p> <p>내용동일</p> <p>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공탁제도는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하여 운영되는 것이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또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 공탁통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판[전합] 1997.10.16. 96다11747).</p>
		수정 사유	내용오류
공탁법 96~96p 1. (2) ④	개념,공식-설명	<p>(2)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단서)</p> <p>④ 강제집행에 의하는 경우 ㉠ 피공탁자가 이해관계인인 공탁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공탁자의 승낙서에는 공탁통지서의 첨부 없는 피공탁자의 출급청구에 대한 승낙의 취지를 기재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2)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단서)</p> <p>④ 강제집행에 의하는 경우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인 피공탁자로부터 공탁통지서를 교부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p>
		수정 사유	내용 오류
공탁법 131~131p 3. (1) ②	개념,공식-설명	<p>3. 배당 등에 따른 지급 (1) 의 의 ① 내용동일 ② 집행법원이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권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는 사무에 대한 불복방법은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16조에서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대결 1999.6.18. 99마1348).</p>	<p>3. 배당 등에 따른 지급 (1) 의 의 ① 내용동일 ② 집행법원이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권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는 사무에 대한 불복방법은 민사소송법 제504조 (현: 민사집행법 제16조)에서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대결 1999.6.18. 99마1348).</p>
157~157p 2. ② ㉠	개념,공식-설명	<p>2. 국민주택채권 ① 내용동일 ② 매입의무자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그 등기 의무자가 매입의무자이다.</p>	<p>2. 국민주택채권 ① 내용동일 ② 매입의무자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자가 매입의무자이다.</p>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부동산등기법 340~340p 2. (2) ①㉞	개념, 공식-설명	㉞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 :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등기선례 제201508-4호).	㉞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등기선례 제202305-1호).
		수정 사유	전합판례로 인한 수정
부동산등기법 390~390p II. 2. ②	문제-본문	2. 수용·사용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② 다만, 위에 열거된 법률의 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라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예컨대, 한국전력공사가 전원개발사업자로서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을 근거로 하여 토지의 사용에 관한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등기선례 제202002-1호).	2. 수용·사용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② 다만, 위에 열거된 법률의 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라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예컨대,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에 “사업시행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등기선례 제202104-4호).
		수정 사유	법개정으로 인한 내용수정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